#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7

발의연월일: 2024. 6. 18.

발 의 자: 권영세·이인선·주호영

김정재 · 곽규택 · 임이자

구자근 · 강대식 · 박대출

서일준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입주자모집 절차가 공공주택사업자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으며, 소득·자산을 비롯한 입주자격 확인에 장기간 소요되어, 입주희망자가 적기에 원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편의를 높이고, 적기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부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주 신청 가능한 주택 현황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정보체계 구축·운영 과정에서 금융·신용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목적 외 사용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벌칙 조항 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관련 벌칙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바,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현행 법령상 미비사항도 보완·개선하고자 함(안 제48조의8 신설,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 등).

#### 법률 제 호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제1절에 제4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8(입주자 자격 정보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입주 자 자격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세대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 자격 확인 등을 위한 금융 및 신용정보 등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7까지를 준 용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자에게 입주자 자격 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입주 신청 가능한 주택 현황, 입주 대기 순서 등 입주 관 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기관(이하이 조에서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의 운영 및 정보 제공 등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57조제6항 중 "위반하여"를 "위반하여(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7조의4 중 "제48조의5제5항"을 "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48조의5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2. 제50조의4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입주자 자격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8의 개정규정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체계가 구축된 이후 최초로 공급(재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공임대주택(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 제3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48조의8(입주자 자격 정보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또
	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입주자 자격 확인을 신청
	하는 경우 신청자 세대의 입주
	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 자격 확인 등을 위
	한 금융 및 신용정보 등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48조의4
	부터 제48조의7까지를 준용한
	<u>다.</u>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자에게 입주자 자격 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공급 가능한
	주택 현황, 입주 대기 순서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u>한다.</u>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입주자 자격 확
	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이라 한다)을 지

제51조(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저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2. (생략) <u><신 설></u>

② ~ ④ (생 략)

제57조(벌칙) ① ~ ⑤ (생 략)

⑥ 제48조의5제5항을 <u>위반하여</u>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57조의4(벌칙) 제48조의6제2항 제57조의4(벌칙) ------(<u>제48조의5제5항</u>을 위반한 경우 --<u>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u>

정·고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자
격 확인기관의 운영 및 정보 제
공 등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u>있다.</u>
제51조(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
1.•2. (현행과 같음)
<ol> <li>1. · 2. (현행과 같음)</li> <li>3.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li> </ol>
3.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3.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
<ul><li>3.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li><li>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 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li></ul>
<ul> <li>3.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li> <li>② ~ ④ (현행과 같음)</li> </ul>
<ul> <li>3.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li> <li>② ~ ④ (현행과 같음)</li> <li>제57조(벌칙) ① ~ ⑤ (현행과 같음)</li> </ul>
3.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① ~ ⑤ (현행과 같음)
3.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반하여
3.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① ~ ⑤ (현행과 같음)
3.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반하여
3.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신 설>

3. (생략) 제60조(과태료) ① (생 략) <신 설>

	경우를 포함하며, 제48조의5제5
	<u> ठॅ</u> }
	,
제	58조(벌칙) ①
	<u>.</u>
	1 . 9 (처해고, 가.오.)

- 1.•2. (현행과 샅픔)
- 3.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 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 공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4. (현행 제3호와 같음)

-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 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2. 제50조의4에 따른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 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 지 아니한 자

2	(생	략)
<u> </u>	\ 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 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 다.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